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1. 7.

발 의 자 : 강대홍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현행 도시계획조례중 일부조항의 지나친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
-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합한 문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문은 삽입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부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과 상충
 -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제2항 삭제
-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양하고,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 완화
 - 제49조(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기준)
-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문의 수정 및 삽입으로 미비점 보완
 - 부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도시계획법, 같은법시행령제53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건축물의 높이) 제1항1호의 “5층이상”을 “2층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①(생략)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 한다 ③~④ (생략)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①(현행과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 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미관지구 : 5층이상(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복합건축물일 경우 주거용이 50퍼센트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③ - ④ (생략)	제49조(건축물의 높이) ① ----- ----- ----- 1. ----- <u>2층이상</u>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부 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u>일반주거지역이</u>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적용은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u>제7조제2항</u> ----- ----- <u>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u>이 ----- 변경지정될 때까지 ----- <u>건축제한에 관으로는</u> ----- -----